*현재 회칙*

**< 대한정형외과학회 경기지회 회칙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 경기지회라 부른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경기도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정형외과학의 연구 발전과 학문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한정형외과학회 및 경기도 의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

*개정안*

**<대한정형외과학회 경기지회 회칙>**

개정:

1차: 2015.3.14

2차: 2017.3.18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중앙회인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지역 학회로서 대한정형외과학회 경기지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를 경기도에 두며 지부를 경기도 내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정형외과학의 연구 발전과 학문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한정형외과학회 및 경기도 의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 및 정형외과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고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에 따라 입회 신청을 하고 정약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라야한다.

2. 준 회 원 : 대한정형외과학회 준회원 및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입회 신청을 한 자라야한다.

3.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특별회원 : 경기지역 이외의 국내외 거주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여 이사회에서 하가를 받은 자.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2. 준회원: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준회원

3. 명예회원:

본회 또는 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한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특별회원:

경기지역 이외의 국내외에 거주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여 이사회에서 허가를 받은 자

제 5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고 있으며,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3. 연수교육을 통한 적정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6 조 (상벌규정)

1.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기 총회에서 포상 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3. 회원으로서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본 회에 대하여 명예 훼손 혹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차분(손해배상, 경고, 정직, 제명 등)할 수 있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고 있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2.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3. 본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에 참석하여야한다.

제 6 조 (상벌규정)

1.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기 총회에서 포상 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 회원으로서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본 회에 대하여 명예 훼손 혹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처분(손해배상, 경고, 정직,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

제 7 조 (정례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정형외과학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회 개최

2. 제반간행물 발간

3. 지역 회원간에 친목 강화

4. 연수교육

제 8 조 (수시사업)

본 전조의 정례 이외에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사업을 집행한다.

**제 3 장 사업**

제 7 조 (정례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정형외과학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회 개최

2. 제반간행물 발간

3. 지역 회원간에 친목 강화

4. 연수교육

제 8 조 (수시사업)

전 조의 정례사업 이외에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사업을 집행한다.

**제 4 장 임원**

제 9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이사장 1명

4. 차기이사장 1명

5. 이사 20명 내외(학술, 재무, 기획, 섭외, 홍보)

6. 총무 1명

7. 감사 2명

**제 4 장 임원**

제 9 조 (임원)

본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 회장 1명

3. 이사장 1명

4. 차기 이사장 1명

5. 이사 (평의원) 25명 내외(학술, 재무, 기획, 홍보, 법제, 총무이사)

~~6. 총무 1명~~

6. 감사 2명

본회는 지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부회장 (각 지부의 지부장)

2. 간사 (각 지부의 총무)

제 10 조 (임원선출)

1. 회장, 차기회장, 차기이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이사는 이사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10인 이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본 회의 역대 회장들로 하며 본 회의 자문에 응한다.

4. 총무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5. 감사는 개원의 1명, 봉직의 1명을 선출한다.

6. 기타 이사회에 제출된 사안

**7. 각 수련병원의 과장은 당연직 이사에 임명한다.**

제 11 조 (임원선출) 회장 및 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 및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임원의 선출)

1. 이사장은 차기 이사장이 승계한다.

2. 회장, ~~차기 회장~~, 차기 이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이사는 이사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전체 이사의 1/2 이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본 회의 역대 회장들로 하며 본 회의 자문에 응한다.~~

~~4. 총무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4. 감사는 2명으로 한다.

~~6. 기타 이사회에 제출된 사안~~

5. 지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부장(부회장)은 지부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6. 지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간사는 인준된 부회장(지부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 및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선출)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 : 회무를 관장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 : 구성하고, 본회의 사무를 분담 처리 한다.

4. 감사 : 본 회 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의 임무

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나. 회장은 업무상 이사회, 각 위원회 및 지부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차기 회장의 임무

차기 회장은 회장 임기 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 한다.

3. 이사장의 임무

가. 회무를 관장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각 위원회 및 지부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나.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차기 이사장의 임무

가. 차기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사장이 참가하는 회무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사장 유고 시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나.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 임기 만료 시 이사장직을 승계 한다.

3. 이사의 임무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 일체를 관장하고, 본회의 사무를 분담 처리 한다.

4. 감사의 임무

가.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는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5 장 기구 및 회의**

제 13 조 (기구)

본회의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자문 위원회

**제 5 장 기구 및 회의**

제 13 조 (기구)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자문 위원회

가. 자문위원회는 본회의 역대 회장 및 역대 이사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구성하며 본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한다.

나.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4. 지부

가. 본회는 지역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부를 둘 수 있다.

나. 지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다. 지부의 운영은 지부장(부회장) 및 간사가 회장 및 이사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 14 조 (총회소집)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를 구분하여 정기총회는 춘계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 통고는 정기총회의 개최1개월 전에, 임시총회의 개최 2주일 전에 하여야한다.

제 15조 (총회 의결 정촉)

총회 참석한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재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으로 결정하며, 회칙 개정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제 16 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중요 사업의 계획 수립

2. 예산 및 결산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

4. 회장, 차기회장, 이사장 및 감사 선출에 대한 인준

5. 감사보고

6.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14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춘계에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 통고는 정기총회의 개최 1개월 전에, 임시총회의 개최 2주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 15조 (총회의 의결 정족)

총회 참석한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으로 결정하며, 회칙 개정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제 16 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중요 사업의 계획 수립

2. 예산 및 결산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

4. 회장, 차기회장, 이사장 및 감사 선출에 대한 인준

5. 감사보고

6.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17 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에 의하여 소집하며 또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 18 조 (이사회 의결 정족)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에 의하여 소집하며 또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 19조(이사회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

2) 회원의 가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의 추천 및 특별 회원에 대한 허가

4) 임원(회장, 차기회장,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5) 예산편성

6) 기타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

2. 이사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0 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임원 선출에 대하여 협조하며, 회장 및 이사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 17 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에 의하여 소집하며 또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 18 조 (이사회 의결 정족)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에 의하여 소집하며 또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 19 조(이사회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

2) 회원의 가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의 추천 및 특별 회원에 대한 허가

4) 임원(회장, 차기회장,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5) 지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부회장, 간사)의 임명

6) 예산편성

7) 기타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

2. 이사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0 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임원 선출에 대하여 협조하며, 회장 및 이사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 6 장 재정**

제 21 조 (재정)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이사회비 : 년10만원

2. 입회비 : 3만원

3. 년회비 : 3만원

4 학회참가비 : 1만원

5. 찬조 및 기부금

6. 기타 수입금

제 22 조 (재산관리)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사장이 이를 보관한다. 단, 회장의 명에 따라 위임자를 두어 위임자가 관리할 수 있다.

제 2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 익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재정**

제 20 조 (재정)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이사회비: 년10만원

~~2. 입회비 : 3만원~~

~~3. 년회비 : 3만원~~

~~2. 학회참가비: 1만원~~

2. 찬조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 21 조 (재산관리)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단체 명의의 법인 통장(대정경기지회)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사장이 이를 보관한다. 단, 이사장의 명에 따라 위임자를 두어 위임자가 관리할 수 있다.

제 22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 익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부칙**

제 24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5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사후인준을 받는다.

**제 7 장 부칙**

제 23 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4 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사후 인준을 받는다.